

4. 민주화과정에 있어서 한국언론의 위상 (I)

崔 明

<목 차>

- | | |
|-------------------|---------------------|
| 1. 머리말 : 민주화와 언론 | 4. 국민이 보는 언론 |
| 2. 제 5 공화국의 언론구조 | 5. 맺음말 : 다시 민주화와 언론 |
| 3. 제 6 공화국의 언론구조* | |

1. 머리말 : 민주화와 언론

한국에 있어서 보다 민주적인 정권의 탄생 내지는 보다 민주적인 체제로의 이행의 전망은 어떠한가? 여기서 언론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소위 민주화라고 불리우는 민주적인 체제로의 이행의 문제는 적어도 지난 수년간 지적 집단과 정치가들 사이에서는 물론 일반국민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민주화의 문제는 어쩌면 세계적인 관심사일 것이다. 그러나 권위주의적인 제 5 공화국이 미흡하나마 경쟁적인 선거에 의하여 제 6 공화국으로 탈바꿈한 우리에게는 그것은 단순한 관심사를 넘어서 이제 미래에 대한 약속이 되어 버렸다.

민주화의 전망을 가름함에 있어서 먼저 착수해야 할 것은 헌팅톤(Samuel P. Huntington)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 종속 변수를 정의하는 일이다.¹⁾

* 3절 이하는 다음 호에 게재할 예정임.

1) Samuel P. Huntington, "Will More Countries Become Democratic?"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는 무수하며, 혹자는 그것을 인간이 성취할 수 없는 이상적인 제도로 정의한다. 또 혹자는 정치와 무관하다시피한 영역이나 제도에 연관시켜서 정의하기도 한다. 예컨대, 배크랙(Peter Bachrach)은 민주주의 체계에 있어서 정부가 갖는 최대의 목표가 “모든 개인의 自己發展을 最大化”시키는 것이라고 말한다.²⁾ 또 다알(Robert Dahl)도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그 모든 시민에게 완전히 혹은 거의 완전하게 책임을 지는” 체제라고 주장한다.³⁾ 이러한 정의는 規範的인 정치이론에는 중요한 의미를 갖을지 모르나, 경험적인 분석에는 그렇게 유용하다고 할 수가 없다.

첫째, 그러한 정의는 너무 모호하고 일반적이기 때문에 실제에 적용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예컨대, 어떤 정치체제가 개인의 자기발전을 최대화하려고 한다든지, 혹은 모든 시민에게 완전하게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누가 도대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둘째, 민주주의는 또 사회정의, 평등, 자유, 진보 등의 기타 모든 좋은 것들을 포함하는 시민적 德性과 동일시되도록 광범한 개념으로 정의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는 민주주의와 기타 사회적 목표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⁴⁾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비교분석을 위해서는 보다 경험적이고 제도적인 정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고 있는 한 예가 헌팅톤이 따르고 있는 슈페터(Joseph A. Schumpeter)에서 발견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99, No. 2 (Summer, 1984), p.195.

2) Peter Bachrach, *The Theory of Democratic Elitism: A Critique* (Washington, D.C.: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0), p.24.

3) Robert A. Dahl, *Polyarchy: Participation and Opposi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1), p.2.

4) John D. May, “Defining Democracy: A Bid for Coherence and Consensus,” *Political Studies*, 26 (March 1978), pp.1-14. 또 민주주의에 대한 합리적이고 기술적인 개념에 대한 분석으로는 Jeane J. Kirkpatrick, “Democratic Elections, Democratic Government, and Democratic Theory,” in David Butler, Howard R. Penniman, and Austin Ranney (eds.), *Democracy at the Polls* (Washington, D.C.: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1981), pp.325-348.

된다. 즉, 어떤 정치체제가 민주적이라고 정의되는 것은 “그 체제의 가장 강력한 집단적인 결정형성자들이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는 범위”내에 한한다는 것이다.⁵⁾ 물론 그 선거에서는 입후보자들이 득표를 위하여 자유롭게 경쟁하며, 또 성인의 시민에게는 누구에게나 투표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정의한다면, 민주주의에는 두개의 차원, 즉 경쟁과 참여가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이것은 다알이 그의 폴리아키(polyarchy)의 개념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다알에 의하면, 현실주의적인 민주주의는 다음의 여덟가지 제도상의 보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1. 조직을 결성하고 가입하는 자유
2. 표현의 자유
3. 투표권
4. 공직의 피선거권
5. 지지와 투표의 획득을 위하여 경쟁하는 정치지도자의 권리
6. 정보의 선택적인 소오스(source)
7.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8. 정책을 작성하는 정부의 기구가 투표와 기타 선택(preference)에 대한 표현에 의존.⁶⁾

이 가운데 처음 여섯은 언론과 결사에 관한 고전적 민주주의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것은 평등이라는 고전적 민주주의 두번째의 가치를 함축하고 있다. 말하자면 이들 권리에 대한 보장이 경쟁과 참여의 전제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특히 현대사회의 매스 미디어와 연관시켜 생각할 때,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선택적인 소오스의 문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언론이 사회의 公器로서 자유

5) Huntington, “Will More Countries Become Democratic?” p. 195. 또 Joseph A. Schumpeter,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2nd ed.; New York: Harper, 1947), p. 269.

6) Dahl, *Polyarchy*, p. 3. 또 아렌트 레이파트 著, 최명 譯, 『民主國家論』(서울: 法文社), p. 22.

롭고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없다면, 또 선택적인 정보의 소오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 체제의 제도적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언론은 어느 정도로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

민주화의 과정을 기술함에 있어서 학자들은 흔히 세 가지의 모델을 거론한다. 하나는 영국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고전적인 線形 모델이다. 여기서는 시민권이 정치적 권리, 그 다음으로 사회적 권리로 점차로 확대되면서, 의회의 우위와 내각제 정부가 확립된 경우이다. 둘째는 전제와 민주주의가 반복되는 週期形 모델이며, 세째는 그 어느 것도 아닌 변증법적 모델이다.⁷⁾ 그러나 어느 경우이나 민주화의 과정에는 자유화가 선행한다. 여기서 자유화란 국가나 정당의 의해서 범해지는 불법적인 행위로부터 사회집단과 개인을 보호하는 효과적이고 확실한 권리의 수립과정이다. “개인의 차원에서 보면 이러한 권리보장은 자유주의적 전통의 고전적 요소들, 즉 사적인 가정생활과 통신의 신성성, 현존하는 법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회운동·언론 및 청원의 자유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집단의 수준에서 보면 이러한 권리들은 정부정책에 대한 집단적 저항의 표현에 따른 처벌로부터의 자유, 커뮤니케이션 수단에 대한 감독으로부터의 자유, 다른 시민들과 자발적으로 결사할 수 있는 자유 등과 같은 것들을 망라한다.”⁸⁾ 그렇다고 한다면 언론의 문제는 자유화의 단계에서의 문제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든 위의 문제는 한국 언론의 위상을 밝힘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언론의 위상을 밝히는 작업이 용이한 일은 아니나, 여기서는 한국언론의 구조와 언론정책, 그 변화과정과 현실 등의 문제를 주로 논의하고자 한다.

7) Huntington, “Will More Countries Become Democratic?” pp.209-211.

8) 오도넬·슈미트 著, 한완상·김기환 譯, 『독재의 극복과 민주화』(서울: 다리, 1987), p.21.

2. 제 5 공화국의 언론구조

민주화 과정에 있어서의 한국 언론의 위상을 고찰하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제 5 공화국의 언론구조를 살펴 보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역대의 정부가 제마다의 언론 정책을 갖고 제도언론구조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였지만, 1980년에 시작된 제 5 공화국만큼 독특한 언론정책을 구사함으로써 철저한 제도언론을 구가한 정권은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다른 이유도 있다. 그것은 언론을 포함한 제 5 공화국의 권위주의적 체제가 1987년 소위 6·29선언을 계기로 약화되어, 적어도 형식적인 민주화로의 이행의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6·29선언 이후 언론은 자유경쟁체제로 돌입하게 되었고, 상당한 자율성을 획득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말하자면, 제 5 공화국이 출범하면서 철저하게 공고화된 제도언론이 와해되기 시작한 것이 제 5 공화국의 말기였기 때문이다.

[1] 80년 초의 상황

유신독재아래서 누적되어온 사회모순과 대립의 구조는 10·26을 계기로 정치적 민주화의 요구로 배출되었다. 1979년 10·26이후 모든 언론·출판·보도는 제엄이라는 상황 때문에 검열을 거쳐 제작되었으나, 유신아래서의 여러가지 금기사항은 상당히 완화되었다.⁹⁾ 우선 신문잡지 등의 출판매체에서는 그동안 금기의 필자로 간주되던 인사들의 글이 실리기 시작하였고, 1980년 초에는 특히 신문에서 “편집권의 독립”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였던 것이다. 편집권의 독립문제는 유신아래서도 심각하게 제기된 적이 있었다. 그것은 1975년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소위 언론파동의 과정속에서도 문제가 되었으나, 그때에는 편집권에 대한 개념조차 명백하게 정립되지 못한채 논의 자체가 긴급조치 제 9호(1975

9) 본문의 설명은 정진서, “80년대 한국언론의 위상 I : 80년대 한국언론의 공과,” 『신문과 방송』(1989년 9월호), pp.5-6을 주로 참조함.

년 5월 13일)에 의하여 중단되고 말았다.¹⁰⁾ 80년대 초에 자유화의 일환으로 재연된 편집권의 독립문제는 유신헌법의 개정과 연관되어 국민의 기본권으로 논의되었던 것이다.

자유화의 바람은 방송매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방송은 정치·경제·사회의 제분야에 걸친 다양한 문제를 좌담·대담·대화의 형식으로 방영하였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KBS-TV의 “개헌공청회”였다. “TV 개헌공청회”는 1980년 1월 30일에서 2월 1일까지 3회에 걸쳐서 KBS가 개최 방영한 것으로서 “정부형태,” “국회 및 지방자치제,” “기본권 및 사법권의 독립”의 세 주제를 내걸고, 주제발표와 토론, 이어서 방청객의 질문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그것은 TV가 특히 정치적 문제에 관하여 자유로운 대화의 공개토론장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10·26이후 언론의 자유화를 위한, 혹은 이와 관련된 토론회·공청회·세미나 등이 잇달아 개최되었다. 예컨대 광고문화연구원 주최의 “언론의 자유와 방송”(1980. 3. 15), 한국신문연구소 주최의 “80년대 한국언론의 사명”(1980. 4. 10~12), 한국기자협회 주최의 “헌법개정과 언론의 자유”(1980. 4. 8)와 “언론조항에 관한 개헌공청회”(1980. 4. 25)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한국신문학회, 정부의 개헌연구반, 국회의 개헌특별위원회 등도 언론의 자유와 자율성에 관한 세미나를 계획했거나, 그 법적 보장의 방침을 밝혔고,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1980년 4월 7일부터 시작되는 제 24회 신문주간의 표어가 “언론의 자유와 책임”이었다는 점에서 언론의 자유에 관한 논의가 매우 고조되었음을 나타냈던 것이다.¹¹⁾

민주화의 과정에 있어서 주기적인 모델이 있다함은 위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지만, 1980년 초의 자유화 운동은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전

10) 송진호, “韓國現代言論史論,” 『言論과 社會』, 歷史와 基督教, 제 7집(서울: 民衆社, 1983), pp. 273-274.

11) 정진서, 앞의 글, p. 6.

국확대조치 이후 역사상 유례없는 수난의 과정을 밟게 된다. 민주주의의 필수요건인 표현의 자유를 위시한 기본권은 법률에 의하여도 제약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리로 인정되기도 하지만, 이제 그러한 권리들은 초헌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력화 되었던 것이다.

[2] 언론인 해직과 언론기관 등록취소

1980년 초의 자유화의 열기를 일거에 식혀 버리면서 등장한 군부세력은 정통성없이 출발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회제반분야에서 초헌법적인 정책을 강행하였다. 그것은 언론분야에서 언론인의 해직이라는 형태로 먼저 나타났다. 그것은 물리적인 방법에 의한 언론인에 대한 통제였다.

1980년 7월 29일과 30일 양일간 한국신문협회·방송협회·통신협회는 임시긴급총회에서 “언론자율정화 및 언론인의 자질향상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여기서 (1) 언론의 국익우선, (2) 사회정화에 대한 언론계의 참여, (3) 새로운 언론풍토의 조성, (4) 언론인 재교육이라는 실천목표를 또한 채택했다. 이 가운데서 특히 제3항은 “국가보위 사회정화의 역사적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언론계 자체가 안고있는 저해요인을 과감히 자율적으로 척결하며, 언론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일체의 부조리와 비리를 근절하여 새로운 언론풍토를 조성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언론계 스스로 자신이 정화대상임을 자처했다. 이에 따라 각 언론사별로 언론인을 정리, 언론계를 떠나게 했다. 그러나 언론인의 해직은 당시 개혁주도의 군부세력이 비판적인 언론인들을 사전에 제거하려는 계획아래서 진행된 것이었다.

즉, 국보위가 발족된지 8일후인 80년 6월 8일 개혁주도세력은 언론이 국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국보위 문공분과 위원회 명의로 “언론계 자체정화계획”을 작성했다.¹²⁾ 이 계획에 따르면, 언론

12) 당시 “대외비”의 이 자료는 80년 언론인 해직과 언론기관통폐합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1988년 10월에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무소속의 이철 의원

계 스스로 자율정화토록 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지만, 그 숙정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반체제 용공, 불순한 자 또는 이들과 직간접 동조한 자
- 편집제작 및 검열거부 주동자 및 동조자
- 부조리 부정부패한 자
- 특정 정치, 경제인과 유착되어 국민을 오도한 자
- 기타 사회의 지탄을 받는 자 등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구체적인 숙청방법이 또한 제시되어 있다. 제 1 단계(7.25~7.30)로 한국신문협회와 한국방송협회의 긴급총회를 소집, 자율적인 숙청을 결의토록 한다. 제 2 단계(8.1~8.10)로 각 언론사는 발행인 책임아래 언론자율정화위원회를 설치, 자체숙청을 단행한다. 제 3 단계(8.11~8.30)로 소기의 성과가 없을 때는 檢搜部에서 경영주를 포함해 조사처리한다는 순서였다.

그러나 언론관계 3개 협회의 결의문이 채택되기 훨씬 전인 7월 중순 경 문화방송·경향신문에서 80명이 해직되었고, KBS에서도 86명이 해직되었다. 그리고 이미 그 임시 각 언론사의 대표들은 편집국장들을 포함한 기자전원의 사표를 7월 말까지 받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8월 2일부터 전국의 모든 언론사에는 해직의 선풍이 불기 시작했다. 해직언론인속에는 계엄검열거부운동을 주도했던 기자협회간부전원, 기협 각분회 간부들, 각 언론사의 언론자유결의문 초안작성자, 기타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비협조적인 편집부 간부, 논설주간 등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었다.

1988년 10월 문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해직언론인은 모두 717명으로, 중앙지와 방송의 경우 각사별 해직자는 아래와 같다. 동아일보·동아방송 34명, 중앙일보·동양방송이 30명, 서울신문 18명, 조선일보 14명, 신아일보 36명, 합동통신 14명, 동양통신 8명, 기독교

이 공개한 것이다. 본문의 설명은 “다큐멘터리 5共의 言論受難(20),” 『東亞日報』(1988. 11. 30)에서 발췌했음.

방송 16명, 현대경제 33명, 매일경제 6명, 내외경제 14명, 시사통신 11명, 경제통신 9명, 산업통신 10명, 무역통신 4명 등이었다. 지방의 해직 언론인은 352명이었다.¹³⁾ 지방신문의 경우도 일괄사표가 강요된 후 선별적인 강제해직이 단행되었다고 한다.

해직 언론인을 직급별로 보면, 사장 등 언론사 대표급 임원이 24명, 주필·논설위원 24명, 편집·보도국장, 부국장이 41명, 부·차장급이 153명, 평기자가 480명이었다. 이와 같은 언론인 대량해직은 보안사 언론 대책반이 중심이 되어 각 직급을 망라하여 조직적으로 자행되었던 것이다. 물론 일괄사표제출에 대하여는 일부 기자들이 저항을 했으나 비상계엄의 공포분위기 속에서 대부분의 기자들은 자포자기의 심정에서 사표를 썼다는 것이다.¹⁴⁾

1980년의 언론인 대량 해직은 비상계엄의 정치상황에서 언론자유를 쟁취하려던 언론인과 권력과의 충돌에서 빚어진 사건이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언론인을 순치시키려던 언론정책의 결과였다.

한편 문공부는 1980년 7월 31일 각종의 정기간행물 172종의 등록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였다. 물론 계엄령아래서 실시된 정기간행물의 등록 취소에 관하여 문공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의 취소대상을 발표했었다.

—각종 비위, 부정부조리 등 사회적 부패의 요인이 되고 있는 간행물
—음란, 저속, 외설적이거나 범죄 및 퇴폐적 내용, 특히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에 유해한 내용을 게재해온 간행물

—계급의식을 조장하고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등 발행목적에 위반했거나 법정 발행실적을 유지하지 못한 간행물

그러나 등록이 취소된 간행물 가운데는 위의 기준에 해당이 되어서가 아니라, 정부와 집권세력에 대하여 비판적인 제작태도를 갖고, 따라서 비판적인 내용을 실어왔기 때문에 등록이 취소된 경우도 많았다. 예컨

13) 717명에는 위에서 지적된 KBS 86명과 경향신문·MBC의 80명이 포함된 것이다. “다큐멘터리 5共의 言論受難<4>,” 『東亞日報』(1988. 10. 29).

14) 여영무, “80년대 한국언론의 위상 2: 언론구조 개편과 제도언론,” 『신문과 방송』(1989년 10월호), p. 40.

대, 등록이 취소된 「뿌리깊은 나무」 「창작과 비평」 「씨올의 소리」 등은 진보적 경향의 잡지였다. 또, 「월간중앙」 「문학과 지성」 「기자협회보」 등의 간행물도 등록이 취소됐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제 6 공화국 이후에 복간이 되기도 하였지만, 아무튼 1980년 7월에 폐간된 정기간행물은 모두 172종으로서 주간 15종, 월간 104종, 격월간 13종, 계간 16종, 연간 24종이었다. 이것은 일간 신문과 통신을 제외한 전체 등록정기간행물 1,434종의 12%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업잡지로 말하면 등록 취소비율은 훨씬 많아서, 상업월간지 293종 가운데 27.3%인 80종이, 상업격 월간지 19종 가운데 15%인 3종이, 상업계간지 47종 중 17%인 8종이 폐간되었다.¹⁵⁾ 1961년 5·16 쿠데타 직후 집권세력은 “사이비 언론 및 언론기관 정화”라는 명분아래 월간·계간을 합쳐서 1,170개사(社)의 언론기관을 폐간시킨 적이 있기는 하지만¹⁶⁾, 80년의 언론통제는 파시즘아래서의 독일·이탈리아·일본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고 아니 할 수 없다.¹⁷⁾

[3] 언론기관통폐합

제 5 공화국이 등장하면서 취해진 또 하나의 최대의 언론정책은 언론기관의 통폐합이었다. 1980년 11월 14일 한국신문협회와 방송협회는 각기 임시 총회를 열고, 신문·통신·방송사의 통폐합을 主案으로하는 “건전언론육성과 창달을 위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이것은 한국언론의 전반적인 구조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 결의문에 따르면, “우리 언론이 지난 날의 잔재와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고 공익을 우선시키는 근대적 공공기관으로서의 체제와 태세를 갖추도록 자기혁신을 단

15) “다큐멘터리 5共의 言論受難<12>,” 『東亞日報』(1988.11.14). 다른 자료에 의하면 172종 가운데 유가지가 120종(전체 유가지 453종의 26.3%), 무가지가 52종(전체 무가지 987종의 5.3%)이라는 것이다. 정진석, 앞의 글, pp.6-7을 볼 것.

16) 송건호, 앞의 글, p.222.

17) 김주연, “제 5 공화국 독재권력의 언론통제,” 『신문연구』(1989년 여름), pp.192-210 참조.

행하고자 다음과 같은 결의를 국민앞에 천명한다”고 밝혔다. 요약하면, 첫째, 언론은 사회의 공익이기 때문에 그 공익성에 배치되는 언론구조를 자율적으로 개편한다.

둘째, 구미 각국에 비하여 많은 신문·방송·통신사가 난립하여, 이것이 국민에게 폐를 끼쳐왔고 사회적 적폐가 컸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서 체질강화한다.

셋째, 언론기업의 과점화는 공익에 배치됨으로 개인이나 영리추구의 법인이 신문과 방송을 함께 소유하는 언론구조를 개선한다.

네째, 신문·방송·통신 등 각사가 서울과 지방에 각기 주재기자를 두고 있는 “전근대적 취재방식”을 개선하고, “통상적인 역외뉴스를 통신으로부터” 공급받도록 한다.

다섯째, 국내외 취재와 뉴스공급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통신을 설립한다.

여섯째, 1981년 1월부터 신문을 증면하여 산업사회의 정보수요에 대응하고 언론인의 처우를 동시에 개선한다.

일곱째, 한국언론의 윤리성을 재확인하고 윤리심의 기능을 활성화한다.¹⁸⁾

이상과 같은 결의의 내용에는 모호한 표현이 없지 않으나, 그 요지는 (1) 신문, 방송사 사이의 통폐합, (2) 신문과 방송의 겸영금지, (3) 중앙사의 지방주재, 지방사의 서울주재기자제도 폐지, (4) 통신사의 단일화, (5) 상업방송체제의 공공방송제도로의 전환 등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언론사상 초유의 대 구조개편이었고, 자율결의에 의한 것이라고 하나, 언론인 해직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비상계엄과 신군부세력의 강압아래서 “강요된 자율”결의의 결과였다.

아무튼 이 결의에 따라 전국의 64개 언론매체(신문 28개사, 방송 29개사, 통신 7개사 등) 가운데 신문 14개사(중앙지 1, 지방지 11, 경제

18) 여영무, 앞의 글, pp.42-43.

지 2)와 방송사 27개사(중앙 3, 지방 3, MBC계열 21), 그리고 통신사 7개사 등 모두 45개 매체가 통폐합의 대상이 되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중앙지이던 신아일보가 경향신문에 흡수 통합되어 종래 7개지이던 중앙지가 6개지로 축소되었고, 4개 경제지 가운데 서울경제와 일간내외경제가 폐간되고 한국일보와 코리아 헤럴드에 흡수되었다. 그리하여 경제지는 매일경제와 현대경제(「한국경제신문」으로 제호를 바꿈)의 2개지로 줄었다. 지방지는 1도 1개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종래 15개이던 전국 지방지가 10개지로 개편되는가 하면, 통신은 중앙, 합동의 양대통신이 “발전적”으로 해체되고 연합통신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어느 부분보다도 큰 변화를 겪어야 했던 곳은 방송사였다. 당시까지 방송은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이라는 2원체제의 운영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통폐합 개편에 따라 공익우선의 공영방송체제로 전환되어 KBS와 MBC의 2대 방송으로 개편되었다. TBC의 TV와 라디오는 KBS에 인수되어 KBS 제2TV와 KBS 제3방송으로, TBC FM은 KBS 제2FM으로 각기 개편되었고, 또 DBS는 역시 KBS가 인수하여 KBS 제4방송, 라디오 서울로 개칭하게 되었으며, CBS는 일체의 뉴스보도와 광고기능을 상실하고 복음방송만 하게 되었다.

방송의 경우에 KBS와 MBC로 2원화되었다고 하였으나, 내용에 있어서는 KBS가 MBC의 주식의 65%를 인수함으로써 사실상 공영체제로 일원화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것도 표면상으로는 “공영”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정부경영체제”가 된 것이다.¹⁹⁾

언론사통폐합의 이유는 무엇인가? 스스로 통폐합의 책임자라고 밝힌 당시 청와대 정무비서관이던 허문도는 1988년 국회신문공위의 증언에서 “사이비 언론인은 없어야 언론이 창달될 수 있으며, 사회적 강자인 재벌과 언론을 분리해야 한다는 소신에서 통폐합을 주도했다”고 강변하였다. 그는 또 “집념을 가지고 재벌과 언론의 분리, 사이비기자의 일소,

19) “다큐멘터리 5개의 言論受難(9),” 『東亞日報』(1988년 11월 5일).

언론의 과당경쟁방지 등을 당시 전두환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하였다.²⁰⁾ 허문도의 주장처럼 사실 그러한 의도아래서 통폐합이 추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통폐합의 진정한 목적은 “재벌과 언론의 분리”도 아니고, “언론의 과당경쟁방지”도 아니었다. 1988년 10월 『한국일보』가 입수하여 공개한 “건전언론육성종합방안”이라는 자료는 위와는 정반대의 목적을 지닌 것이었다. 이 자료는 1980년 10월 초에 허문도가 직접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한 언론통폐합 결재서류였다. 이에 의하면 “계엄령하의 보도검열과 협조유도작용으로 타율적 협조체제를 유도하고 있으나, 30%의 저항세력이 잠재해 계엄령해제, 정치활동재개 이후엔 저항세력이 표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고 있어서 사실상 언론통폐합은 “저항세력 제거”가 그 목적이었음을 밝히고 있다.²¹⁾ 요컨대, 통폐합조치는 보도검열을 가능케 했던 당시의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언론을 효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제 5공화국의 집권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통폐합에 의하여 중앙일간지의 지방주재기자 제도가 폐지되고, 따라서 신문사의 지방부도 없어졌다. 이로 인하여 300명 이상의 지방주재기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는데, 통폐합과 지방주재기자제도의 폐지로 말미암아 제 2의 대량해직사태가 발생하였다. 또 방송통폐합으로 민간 방송에서 KBS로 간 인원은 TBC 681명, DBS 139명, CBS 106명 등 모두 1,105명인데, 이 가운데 200여명은 통폐합에 적응하지 못해서 새로운 직장을 포기했다는 것이다.²²⁾

언론사 통폐합의 부작용은 이에 끝난 것이 아니다. 통신사는 경쟁이 없는 단일 통신으로 개편되면서, 지방에서는 연합통신과 KBS 및 MBC 기자만이 취재활동을 할 수 있었다. 1개의 통신은 그나마 인사와 보도에서 모두 정부권력에 크게 영향을 받아 사실상 국영통신이나 다름이

20) 여영무, 앞의 글, pp. 42-43.

21) 『한국일보』(1988년 10월 25일).

22) 여영무, 앞의 글, p. 45.

없게 되었다. 보도와 논평 등의 公正性의 문제는 통신에 국한되지 아니하였다. 보도와 논평이 그 주기능인 종합 TV방송과 라디오방송은 사실상 모두 KBS에 흡수통합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은 “정부의 목소리”로 일원화되어 버린 셈이었고, 공영화는 실제로 명목뿐이었고, 방송은 정부와 여당의 “홍보방송”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게 되었다. KBS와 MBC의 보도가 갖던 편파성은 크게 문제가 되기도 하여, 특히 KBS의 경우는 그것이 시청료거부라는 시민적 저항운동의 도전도 받았다. 이와 같이 언론통폐합은 정부가 신문 및 방송매체를 통제하기 위한 정책이었고, 체제홍보수단으로 최대한 이용하자는 정책이었다.²³⁾

[4] 법률적 언론억압 : 언론기본법

제 5 공화국의 언론구조를 고찰함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법률적 장치는 언론기본법의 제정이었다. 이것은 언론인해직, 언론사 통폐합에 이어졌던 일련의 연쇄조치로서 위에서도 잠시 지적한 바와 같이 제5공화국 제후의 언론대책으로 추진 제정된 것이다. 언론기본법이 법률적인 언론자유의 억압장치임은 뒤에서 다시 논하겠지만, 이미 이에 앞서 제정된 제 5 공화국 헌법은 역대의 어느 헌법에도 없던 불필요한 언론조항을 채택함으로써 언론자유에 대한 불길한 징조를 보인 바 있다. 그것은 1980년 10월 22일 국민투표로 확정된 제 5 공화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제20조 제 1 항)고 규정하고, 이어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20조 제 2 항)고 명문규정을 둠으로써 언론의 내제적 한계와 피해자의 피해보상권을 명시하였다. 언론의 자유도 절대적인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언론에 의한 권리침해는 민법상의 불법행위 혹은 형법상의 명예훼손의

23) 위의 글, p.45.

요건을 구성하는 것이다.²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명문규정을 둔 것은 언론의 공적 책임을 더욱 강조하고 이를 통하여 언론자유 제한을 용이하게 하자는 저의를 보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관계의 입법회의에 의하여 1980년 12월 26일에 제정되어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언론기본법은 표면상으로는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조한 법률이기는 하나, 언론자유 탄압을 위한 조항들을 포함한 법률이었다. 한 논자는 우선 그 제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언기법제정에는 현직 언론인 등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고 신군부세력의 지휘를 받는 몇몇 행정부 관리들만이 기초에 참여했을 뿐더러 이를 심의통과시킨 입법회의도 국민이 선출한 국회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법안의 기초에서부터 제정, 통과에 이르기까지 모두 정당성없는 입법과정을 거쳤다.”²⁵⁾

이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 보면, 우선 언론기본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호하고, 여론형성에 관한 언론의 공적 기능을 보장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복리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 1 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제 2 조에서는 국민의 자유로운 표현의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이러한 “자유와 권리는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받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 3 조에서는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만을 보면, 언론기본법은 언론자유 창달을 위한 기본법인 것과 같이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이 법은 가혹한 언론규제를 위한 법률인 것이다.²⁶⁾

첫째, 언론기본법이 명문화하고 있는 가장 가공할 언론규제는 언론기관의 존폐를 문공부장관이 결정한다는 조항들일 것이다. 언론기본법 제

24) 김철수, 『신헌법학개론』(서울: 박영사, 1980), p.398.

25) 여영무, 앞의 글, p.49.

26) 박권상, “言論基本法을 해부한다,” 『신문연구』(관훈클럽, 1987년 여름), pp.75-89. 언론기본법에 관한 본문의 설명은 이 글을 주로 참조했음.

20조에 의하면, 정기간행물은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여 문화공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견하여 등록은 필요한 요건을 갖추면 “신고”사항과 같이 보이나, 실제로 그것은 문공부장관의 재량권에 속했던 것이다. 언론기본법이 발효하고 있던 기간중, 일간신문이 등록된 것은 한 件도 없으며, 잡지는 더러 등록된 바가 있으나, 문공부의 “사전허가”를 얻은 자에 한정되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등록요건의 기재사항인 “발행목적과 발행내용”이 정치적인 성격의 경우에 친정부적인 것이 아니면 사실상 “사전허가”도 받을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정기간행물의 등록에는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동법 제21조), 상당한 재산이 있지 않으면 출판물을 발간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러한 규정은 출판의 자유를 박탈하는 규정인 것이다.

둘째, 등록 보다도 더욱 언론규제의 보도(寶刀)로 이용될 수 있는 조항은 “등록의 취소”에 관한 것이다. 언론기본법은 제24조에서 언론의 “공적 책임”을 포함하여 7개항의 사유에 해당될 때, 문공부장관은 그 정기간행물의 폐간이나 정간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공부장관의 재량으로 정기간행물의 등록취소를 가능케 한 것이 전형적인 언론자유에 대한 탄압인 것은 물론이다. 특히 정기간행물의 등록취소사유 제 4항이 규정한 “정기간행물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제 3조 제 4항에 의한 공적 책임을 반복하여 현저하게 위배한 때”라는 것은 애매모호한 규정으로서 문공부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등록취소의 가능성을 높였다.

언론기본법에 의하여 일간지가 발행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제재를 받은 일은 없었다. 그러나 잡지에 대하여는 두 건의 등록취소와 한 건의 정간사건이 있었다.²⁷⁾ 이러한 사건이 많은 것은 아니었으나, 정기간행

27) 1985년 문공부는 계간지 『실천문학』이 발행목적을 “반복하여 현저하게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등록을 취소했고, 같은 해 12월 무크지 『창작과 비평』을 발행하던 창작과 비평사의 등록을 취소했다. 이유는 무크지가 정기간행물의 형식을 띠었다는 것이었다. 또 월간 『기독교 사상』은 자진정간의 형식으로 6개월동안 정간했다. 정진석, 앞의 글, p.8 참조.

물의 등록취소의 권한이 문공부의 수중에 있는 한, 그것은 특히 간행물의 제작자에게 심리적인 압력으로 작용했고, 따라서 그들로 하여금 항상 “自己抑制”나 “自己檢閲”을 행하게 한 효력을 지녔었다.²⁸⁾

세째, 언론기본법이 언론통제를 위하여 명문화한 또 하나의 조항은 “편집인과 광고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과중한 책임을 묻는 제22조 제 4 항이다. 즉, 이 조항은 편집인 등이 “정기간행물을 편집하거나 광고함에 있어서 범죄를 구성하는 내용을 배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이를 방송의 편성책임자와 광고책임자에게 준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에게 대하여 형사책임(제53조)을 규정하고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내용의 공표”에 대한 “不排除罪”는 막연하고 애매한 “범죄”를 인정한 것이며 남용의 소지가 큰 “독소조항”으로 간주 되었었다.²⁹⁾

이 밖에 언론기본법은 방송통제의 근거를 마련한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 “전형적인 권위주의 체제의 언론통제를 입법화”한 법률이었고³⁰⁾, 군부세력이 구상했던 대언론연쇄조치의 법률적 보루였다.

[5] 행정권에 의한 억압 : 보도지침

제 5 공화국은 언론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권의 발동을 또한 능사로 삼았다. 물론 언론기본법에 의하여 구성된 방송위원회, 방송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한국언론연구원, 한국방송광고공사 등의 기구를 통하여 문화공보부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언론을 통제하기도 하였으나, 문공부 자체기구인 소위 “홍보조정실(후에 홍보정책실로 개칭)”을 통하여 언론사에 대하여 직접적인 간섭과 통제를 자행하였던 것이다.

당시 문공부 직제에 의하면, 홍보정책실에는 별정직 1급상당의 국가공무원인 실장밑에 홍보정책관 1명, 홍보기획관 3명, 홍보심의관 1명, 홍보담당관 7명이 있었으며, 정책관은 홍보정책의 기획조정을, 기획관

28) 팽원순, “제 5 공화국의 언론정책,” 『신문연구』(관훈클럽, 1987년 겨울), pp. 69-70.

29) 위의 글, p. 70.

30) 박권상, 앞의 글, p. 81.

은 홍보활동의 조정을, 심의관은 홍보활동의 성과의 분석과 평가를, 홍보담당관은 언론인의 취재 및 보도활동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한다. 1981년 9월 당시 문공부 공보국장은 한 세미나에서 “홍보조정실은 언론기관에서 하는 일을 다소 도와주고 정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언론에 전달, 협조를 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하였다지만³¹⁾, 홍보정책실이 보도통제의 일일지침을 마련해 전화로 각 언론사의 편집국 간부들에게 시달렸음을 감안할때 문공부직제가 규정하고 있는 소위 “홍보정책의 기획·조정,” “홍보활동의 조정,” “홍보활동 성과의 분석평가”가 어떤 작업인가는 쉽게 알 수 있는 일이었다.³²⁾ 요컨대 홍보정책실은 제 5공화국 언론통제정책을 대변하는 소위 “보도지침”의 산실이었고, 동시에 청와대와 안기부에서 내려온 언론관계의 보도지침을 개별 언론사에 전달하는 창구였다. 그리하여 홍보정책실이 설치된 이후 언론에 대한 규제가 점차로 심하여져서 “협조”라는 미명아래 “강요”로 변해 갔다는 것이다.

1986년 9월 민주언론협의회가 발행하는 『말』의 특집호는 1985년 10월부터 1986년 8월까지 모두 520건의 보도지침이 홍보정책실에서 각 언론사에 시달렸음을 밝힘으로써 홍보정책실의 정체와 제 5공화국의 제도 언론의 실상을 폭로하였다. 한 언론인은 『말』에 게재된 보도지침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는데, 다소 길지만 여기에 인용한다.

“이 보도지침은 대중조작을 위해 정부에서 시달한 것으로 전체 보도지침 가운데 ‘불가’로 지시한 사례가 44.3%에 달해 제 5공화국정권의 비밀주의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불가’ 지시가 내려진 대상으로는 민주화운동이 26.2%로 가장 높고 대외관계 18.7%, 여론·언론 17.7%, 야당 10.5%, 개헌주장 8.5%의 순이었다.

보도지침은 보도의 내용 또는 형식을 규제하는 두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중략) 보도내용규제는 전체보도지침의 67.7%로 보도형식의 규제(32.3%)의 2배를 넘었다. 보도내용규제에는 ‘절대불가’ ‘별도지침이 있을때까지 불가’ 등

31) 여영복, 앞의 글, p.51.

32) 민주언론운동협의회, 『말』, 특집호, 1986년 9월 8일, p.2.

으로 지시된 것이 41.6%로 가장 많았고 이어 ‘눈에 띄게, 적절히, 크게’ 등과 같이 주문한 홍보·선전성보도가 전체의 24.5%, ‘신중히, 단순하게’ 등의 단서가 붙은 축소보도는 16.1%였다. 또한 보도용어규제도 6.9%였다.

사진통제도 철저해서 ‘반드시 사진을 실을 것,’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춘 사진만 허용될,’ ‘사진불가’ 등으로 지시되었다. 보도형식을 통제하는 보도지침은 ‘1~3단으로 작게,’ ‘눈에 띄게’ 등으로 기사 크기를 지시하고 컷·제목·해설 기사의 유무까지 일일이 간섭했다. 기사의 성격을 권력의 필요에 따라 규정하기 위해 ‘정치면은 안되고 외신·사회면에 실을 것’ 또는 ‘눈에 띄지 않게 간지에만 실을 것’ 등으로 요구했다.

보도형식에 규제를 가장 많이 당한 대상은 학생운동으로 전체의 15.8%, 야당 14.0%, 정부·여당이 12.6% 등이다. 정부·여당 등 집권세력과 관련된 시사형식규제는 ‘크게, 또는 머리기사로 실을 것’에 국한되며 ‘불가’는 거의 찾아 볼수 없다.³³⁾

이러한 언론통제는 제 5 공화국 집권세력의 권위주의적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보도지침이 100% 이행된 것은 물론 아니었다. 편집국내 기자들과 간부들이 “보도지침의 정당성을 따지고 반발기사를 쓰거나, 요구하는 기사를 작게 취급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한 조사에 의하면 보도지침이 70~80% 정도는 반영되었다는 것이다.³⁴⁾ 그러나 보도지침은 강제성을 띠고 있었으며, 그 증거로는 “보도지침을 어겼을 경우에는 야간에까지 전화를 하거나 기관원이 편집국에 나타나 확인하고 신문사의 존폐문제를 내세워 협박했다”는 것이다. 당시는 언론기본법에 근거하여 문공부장관이 언론사의 정간이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보도지침을 통한 통제가 구조적으로 가능했던 것이고, 언론사는 그러한 통제정책에 순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³⁵⁾

제 5 공화국의 군부세력은 정당성없는 정권을 만들고, 이를 유지하기

33) 김주언, 앞의 글, pp.207-8. 또한 보도지침가운데 내용규제를 제 5 공화국 지배체제의 지배유형과 연관시켜 분석한 것으로는 한국사회언론연구회, “1980년대 한국 언론정책의 성격,” 『1980년대 한국사회와 지배구조』(서울: 풀빛, 1989), pp.177-178을 참조할 것.

34) 여영무, 앞의 글, p.53.

35) 위의 글, p.53.

위하여 언론을 순화시키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리하여 재벌과 언론의 분리, 사이비 언론인 정리 등의 명분을 내걸고 위에서 언급한 각종의 방법으로 철저하게 자유언론을 유린했었다.

[6] 언론인 회유

정권이 언론을 통제하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하여 물리적인 강제력을 사용하거나 법률적인 방법에 의존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언론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언론인들에게 물질적 보상을 포함한 다양한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회유시키는 것이다. 언론인에 대한 회유정책은 특히 언론인들이 부패했을 때 더욱 효과적이고, 비단 이러한 방법의 구사는 제 5 공화국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제 5 공화국에 들어서면서 언론인에 대한 회유정책은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제도화된 측면이 없지 않았다.

첫째, 신문협회의 약정형식으로 되어 있는 신문사들의 카르텔을 통해 신문의 면수와 가격을 동일하게 정해 놓고, 또 발행부수와 관계없이 광고료를 동일한 비율로 책정함으로써 독자의 선택권을 박탈함은 물론, 광고주와 소비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치면서 신문사들의 독점적인 이윤을 정부가 보장했던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신문사의 수를 줄이고 신문기업에 새로이 참여할 기회를 봉쇄한 것 자체가 카르텔에 대한 최대의 지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³⁶⁾ 뿐만 아니라, “각 언론사들로 하여금 카르텔을 통해 집중구조를 이루어 연합통신을 비롯하여 한국신문인크 등 제반 언론관련산업의 독점권을 보장해 주면서 개별 언론사들의 잡지, 출판 및 관련업계의 진출 등을 통해 자본실현을 용이하게 하는 다각경영을 조장”했다는 것이다.³⁷⁾ 이것은 언론기업인에 대한 특혜제공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36) 팽원순, 앞의 글, p.72.

37) 한국사회언론연구회, 앞의 글, p.178. 또한 특혜에 따른 언론기업의 성장에 관하여는 김영근, “80년대 한국언론의 위상 3: 언론기업의 성장과 기술의 발달,” 『신문과 방송』(1989년 11월), pp.18-32.

둘째, 언론인에 대한 회유는 소위 공익자금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언론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방송광고공사는 광고대행 수수료의 일부를 징수해서 그것을 “공익자금”으로 운영하는 “세계적으로 그 유례가 거의 없는 독특한 기관”이었다. 이 기관은 그 존립자체도 문제지만, 공익자금의 사용이 더 큰 문제가 되었었다.³⁸⁾ 공익자금은 언론기관 및 언론단체 운영지원, 언론인 연수 및 해외시찰 등에 쓰여졌을 뿐 아니라, 무주택언론인 주택자금융자, 언론금고의 생활안정 자금대부, 언론인 자녀의 학자금지원, 언론인 휴양시설의 건립 등에도 쓰여졌다.

세째, 언론인에 대한 회유책으로는 그들에게 정부의 고위직을 제공하는 방법도 크게 이용되었다. 언론인들의 정계진출은 제3공화국 시절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현상이지만, 아무튼 1980년에 정계와 관계에 진출해 있던 언론인은 100명에 달했으며, 85년에는 152명을 넘어섰고, 87년에는 144명에 달했다는 것이다.³⁹⁾ 집권세력이 언론인을 기용함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정치권력의 신임을 얻었거나, 은밀한 협력의 공을 인정받았거나, 동원이용가치가 있을 만큼 명성이나 능력이 있었거나, 무마·유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반골적”인 경우였을 것이며, 일단 기용된 전직언론인들이 “고비마다 반언론적인 악역을 담당해 왔다”는 것이다. 또 출세를 염두에 둔 “다른 언론인들은 언론기관내부에 잔류, 잠복하여 정치권력의 지배이데올로기와 최고경영자의 제작방침에 영합하여 신문·방송 메시지를 제작하고,”⁴⁰⁾ 집권세력에 의한 부름을 기다리고 있었을 가능성이 컸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언론인에 대한 회유는 금전이나 향응의 제공방법도 있었으며, 제5공화국 출범직후 사회정화란 명목아래 일시적으로 그러한 관례는 사라진 듯 하였으나, 그러한 관례는 그후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여 촌지 등의 명목으로 정례화되다시피 되었다는 것이다.⁴¹⁾ (계속)

38) 팽원순, 앞의 글, p.71.

39) 김주언, 앞의 글, p.205.

40) 위의 글, pp.205-206.

41) 위의 글, p.206.